

도 보

전라남도

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제2017-43호

2017년 9월 20일 (수)

발행 : 전라남도 / 편집 : 대변인실
홈페이지 www.jeonnam.go.kr



목 차

◆ 고 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7-317호 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7-317호

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

「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」(제3959호, 2015.10.5. 제정) 제10조에 따라 「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」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9. 20

전라남도지사

1. 고 시 명 : 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
2. 고시이유
 -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함.
3. 주요내용
 - 적용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 - 적용대상 : 전라남도,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·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·단체에 소속된 근로자
 - ※ 단,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
 - 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
 - 시간급 9,370원 / 월 1,958,330원(209시간 기준)
 - ※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,530원 [고용노동부]
4. 기 타
 - 2018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과(노사협력팀 061-286-3792)로 연락바랍니다.